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
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
여 “신분증 사본”의 첨부 등을 갈음하기 위한 양식(별지 제39
호 양식)을 별도로 신설함(안 제2조)

3.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0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8호”를 “제39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 식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관 련 법 령	비 고
1	착오 또는 유류의 통지서	법 제32조 제1항	
2	경정등기통지서	법 제32조 제3항	
3	토지표시변경 직권등기의 통지서	법 제36조 제2항	
4	각하통지서	법 제37조 제2항 및 제42조 제2항	
5	건물멸실등기 통지서	법 제45조 제1항	
6	지역권설정 통지서	법 제71조 제2항	
7	지역권변경(소멸) 통지서	법 제71조 제4항	
8	추가공동담보(담보권변경 또는 소멸) 등기 통지서	법 제78조 제5항, 규칙 제136조 제2항	
9	직권 말소등기 통지서	법 제92조 제2항	
10	말소등기 통지서	법 제94조 제3항	
11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법 제103조 제3항	
12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 통지서	규칙 제5조 제5항	
13	참여조서	규칙 제8조	
14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15	기타문서 접수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호	
16	결정원본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	
17	이의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18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5조 제1항 제6호	
19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규칙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1항 제7호	
20	각종 통지부	규칙 제21조 제1항 제8호, 제25조 제1항 제8호	
21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9호, 제25조 제1항 제9호	
22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5조 제1항 제10호	
2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규칙 제26조 제1항	

24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규칙 제26조 제1항	
25	등록면허세 등 수령정보	규칙 제45조 제2항	
26	접수증	규칙 제65조 제3항	
27	부동산 멸실등기 통지서	규칙 제84조 제3항, 제103조 제3항	
28	대지권등기 통지서	규칙 제89조 제2항	
29	대지권등기 말소 등의 통지서	규칙 제93조 제5항, 제94조 제2항, 제100조 제5항, 제103조 제2항	
30	확인조서	규칙 제111조 제1항	
30-1	확인조서(법인)	규칙 제111조 제1항	
31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규칙 제117조	
32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규칙 제157조 제1항	
33	과태료 통지서	규칙 제164조	
34	대위신청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5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6	등기필증교부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7	신청서 편철부	규칙 부칙 제3조	
38	등기부책 보존부	규칙 부칙 제3조	
39	신분확인서	규칙 제111조 제1항 등	

[별지 제39호 양식]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 등)

신분확인서

1.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2. 본인확인정보: 모바일운전면허증,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기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식별정보*:

*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모바일운전면허증: 운전면허번호(예: 11-23-012345-67), 식별번호(예: 1234AB)
2.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발급일자, 발급기관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5조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 시행규칙 제77조의 모바 일운전면허증 등)에 해당하므로 신분증의 사본에 같음하여 이 신분확인서를 작성함

20 년 의 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국·과(소)

등기관(담당자)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u>제38호</u> 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 ----- ----- <u>제39호</u>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